



제427회국회(임시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제재처분 상한 설정〉

■ 김형동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8835호)

2025. 7.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목 차

I . 개요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1
III . 주요 내용별 검토	2
1. 제재처분 상한 설정	2
※ 참고자료	6

I. 개요

2025년 3월 12일 김형동위원이 대표발의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2025년 3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행정기본법」상 입법기준에 부합하도록 법률에 제재처분의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4조).

Ⅲ. 주요 내용별 검토

1. 제재처분 상한 설정

개정안은 대행실적 평가 결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부과할 수 있는 영업정지의 처분의 상한을 3개월로 설정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8항제3호).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 ~ ⑦ (생략)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⑧ ----- ----- ----- -----.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3. 제2호에 따라 대행실적을 평가한 경우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평가일부터 6개월 이상 공개하여야 하며, 평가 결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영업정지</u> , 대행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 ----- ----- ----- ----- ----- ----- ----- ----- --3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
4. ~ 7. (생략)	4. ~ 7. (현행과 같음)

현행법 제14조제8항제2호¹⁾는 지방자치단체가 생활폐기물 처리를 대행하여 처리하는 경우, 수집·운반업체의 대행실적 평가기준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여 평가하도록 하고 있음.²⁾

대행실적 평가 결과, 해당 평가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동 조항 제3호에 따라 영업정지, 대행계약 해지 등 제재 처분이 가능함.³⁾

다만, 영업정지의 기간은 법률에 별도로 명시되어있지 않는데, 개정안은 「행정기본법」이 제정('21.3.)됨에 따라, 「행정기본법」상 입법기준에 부합하도록 법률에 제재처분의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행정기본법」 제22조제1항⁴⁾은 제재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제재처분의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하되, 이 경우 제재처분의 유형 및 상한을 정할 때 해당 위반행위의 특수성 및 유사한 위반행위와의 형

1) 「폐기물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⑧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생 략)

2.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주민만족도와 환경미화원의 근로조건을 포함한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평가기준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행실적 평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전문가 등으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2) 참고 : 환경부(2024),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 적용지침」 참조

3) 다만 2024년 기준 폐기물 처리 대행실적 평가 결과 영업정지 등 제재 처분을 한 사례는 없음.

4) 「행정기본법」 제22조(제재처분의 기준) ① **제재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제재처분의 주체, 사유, 유형 및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재처분의 유형 및 상한을 정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의 특수성 및 유사한 위반행위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행정청은 재량이 있는 제재처분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동기, 목적 및 방법

2. 위반행위의 결과

3. 위반행위의 횟수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음.

제재처분의 상한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는 경우 행정의 예측성과 국민의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한편, 개정안은 영업정지 기간의 상한을 3개월로 설정하고 있는데, 동법 시행규칙 [별표]에는 영업정지 기간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지만, 생활폐기물 수거·운반은 지역 주민 생활과 직결되므로 과도하게 긴 상한을 설정하기보다는 3개월의 상한을 설정하는 것이 위반행위의 특수성과 공익성을 고려했을 때 적절해 보임.

참고로, 동 개정안과 유사하게 법률에서 제재처분의 상한을 명시하고 있는 유사 입법례로서, 동법 제13조의4는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에 대한 영업 정지의 상한을 6개월로 설정하고 있고, 「식품위생법」 제75조는 식품영업자에 대한 영업 정지의 상한을 6개월로 정하고 있음.

[제재처분의 상한을 명시하는 유사입법례]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4(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지정 등) ⑥ 환경부장관은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6. (생략)

「식품위생법」

제75조(허가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식품접객영업자가 제13호(제44조제2항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를 위반한 경우로서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

문 의 처

02)6788-5546

※ 참고자료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
기준 적용지침(2024.5.)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 적용지침

1. 목 적

-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가 생활폐기물 처리를 대행하여 처리하는 경우, 수집·운반업체의 대행실적 평가기준을 지자체 조례로 정하여 평가(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8항제2호)하도록 함에 따라,
- 지자체가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평가기준을 제공함으로써, 적정 수집·운반업체에 폐기물처리를 대행토록 하여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및 청소행정의 효율성 도모를 목적으로 함

2. 적용 원칙

- 이 지침에서 정한 평가기준 및 항목을 준용하여 지자체별 특성을 고려한 평가기준 및 항목을 지자체 조례로 정하여 평가를 실시
- 대행실적 평가는 외부 전문가 및 주민 대표 등으로 구성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평가결과는 공개
- 지자체의 장은 대행실적 평가결과, 우수업체에 대하여 포상 및 우대 지원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평가결과가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영업제한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지자체의 장은 대행업체가 변경될 경우에는 기존업체의 고용인력 및 청소장비 등이 가능한 승계되도록 노력하여야 함
- 지자체의 장은 평가업무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폐기물 관리법 제58조의2에 따른 한국폐기물협회에게 평가와 관련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음

3. 평가기준 주요 내용

- 평가 방향
 - 객관적 평가를 위해 ①일반주민을 대상으로 주민만족도 평가(설문조사), ②주민대표에 의한 수거상태 및 시설에 대한 현장 평가(평가단 현장평가), ③행정 담당자에 의한 서류평가(실적서류 평가)로 다각화
 - 민·관 합동평가로 주민의 행정참여 기회 제공 및 설문조사를 통한 쓰레기수거 주민만족도를 충분히 반영
 - 환경미화원에 대한 근무환경(처우, 안전, 위생 등) 및 해당 사업장에 대한 만족도 등을 평가항목에 포함시켜 근로조건 개선에 도모
- 평가 시기 및 횟수 : 연 1회(연중)
- 평가 방법 및 배점(예시)

총점	주민만족도 평가	평가단 현장평가	실적서류 평가	비고
100	30	40	30 (±2)	가점 2점, 감점 2점

- 평가결과 적용
 - 평가결과를 토대로 각 업체의 대행실적을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부진으로 등급화하고, 평가결과는 인센티브 및 페널티 부여 등에 활용

등급	평가점수	활용(예)	
		대행기간 중	재계약 시
탁 월	90점 이상	포상금 지급, 표창 등	입찰참여시 가점부여
우 수	80점 이상 90점 미만	표창 등	입찰참여시 가점부여
보 통	70점 이상 80점 미만	개선명령	-
미 흡	60점 이상 70점 미만	개선명령 또는 영업정지	개선 조건부 입찰
부 진	60점 미만	영업정지	영업정지

- 다만, 기존 계약에 대해서는 변경 전 지침을 적용